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조 1,663억원 으로 기정(당초)보다 8,303억원(3.6%)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백만원, %)

	분		20)22년도			증감율	
구		예	산	추경예산	증감		01	i 世
		당초	기정	十分에겐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3.6	3.6
지병	방세수입	23,095,574	23,095,574	23,095,574	_	_	-	_
	경상적	68,933	68,933	68,933	_	_	_	_
세외 수입	임시적	169,149	169,149	169,149	_	_	_	_
구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746	746	746	-	_	-	_
보조금	국고 보조금등	1,539	1,539	1,539	_	_	_	_
보전 수입등	보전수입등	_	_	830,340	830,340	830,340	100.0	10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중감내역** (단

(단위 : 백만원)

7.11			예 산 액				
구분 세목	예산		추경예산	증	비	고	
	당초	기정	구경예산	당초	기정		
총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보전수입등	_	_	830,340	830,340	830,340		
순세계잉여금	-	-	700,551	700,551	700,551		
법정잉여금	-	-	129,789	129,789	129,789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1,984억원 으로 기정(당초)예산 3조 1,960억원 대비 0.1%(24억원) 증액된 수준 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	2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7	工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3,196,030	3,198,431	2,401	0.1
행	소	계	851,306	853,707	2,401	0.3
정	행정운영경비		794,085	794,085	_	_
관	재무	활동	15,431	15,463	32	0.2
리	사 업 비		41,791	44,160	2,369	5.7
	교 부	금	2,344,723	2,344,723	_	_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중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제 별 기 어 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기 정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8,067	20,468	2,401	13.3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30	15,463	32	0.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37	5,005	2,369	89.8		

Ⅱ.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O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은 45조 3,689억원으로 기정예산(44조 2.449억원) 대비 2.5%(1조 1.239억원*) 증액된 수준으로.
- 2021 회계연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8,303억원)과 국고보조금(89억원), 세외수입(1억원), 내부거래(2.846억원)로 구성되어 있음.
- * 재난관리기금에 직접 계상하는 국고보조금 2,611억원 포함 시 추경규모는 1조 3,850억원

$\langle 2022$ 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langle 20 \rangle$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가	
те	구성에인(간)	기장에건	금 액	비율
총계규모	45조 3,689억원	44조 2,449억원	1조 1,239억원	2.5%
일반회계	32조 1,965억원	31조 3,653억원	8,311억원	2.6%
특별회계	13조 1,724억원	12조 8,796억원	2,928억원	2.3%

○ 의무경비 등

3,800억원

○ 재정투자사업

7,439억원

- 민생일상화복 : 민생경제화복 및 일상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248억원
- 방역체계 전환 신속대응 및 감염병 대응역량 걍화 2,061억원
- 안심·안전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1,130억원
- 재무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가)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21회계연도 발생, 5조 8,712억원) 중 8,303억원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 '21회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6조 4,428억원(일반회계 5조 8,712억원, 특별회계 5,716억원)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세입총괄표(안)〉

(단위 : 천원)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만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45,368,868,810	100.0%	44,244,927,887	100.0%	1,123,940,923	2.5%
	지방세수입	23,095,574,000	50.9%	23.095,574,000	52.2%	2	12
	세외수입	4,440,509,611	9.8%	4,440,357,721	10.0%	151,890	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315,120,150	7.3%	3,315,118,738	7.5%	1,412	0.0%
	임시적세외수입	655,780,658	1.4%	655,630,180	1.5%	150,478	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69,608,803	1.0%	469,608,803	1.1%	=:	5=
세	지방교부세	205,738,646	0.5%	205,738,646	0.5%	R	æ
	보조금	8,012,787,586	17.7%	8,003,890,677	18.1%	8,896,909	0.1%
입	국 고 보 조 금 등	8,012,787,586	17.7%	8.003,890,677	18.1%	8.896,909	0.1%
1	시 · 도 비 보 조 금 동	-	=	=	-	F)	6 =
	지방채	1,708,895,000	3.8%	1,708,895,000	3.9%	9:	85
	보전수입동및내부거래	7,905,363,967	17.4%	6,790,471,843	15.3%	1,114,892,124	16.4%
	보 전 수 입 동	1,240,614,287	2.7%	410,273,900	0.9%	830,340,387	202.4%
	내 부 거 래	6,664,749,680	14.7%	6,380,197,943	14.4%	284,551,737	4.5%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 총괄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요예산 주요내용 총 계 11,239 소 계 4,248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953 매출 감소 소상공인 7.7만개소 지원 등 소 상 공 인 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301 고용장려·고용유지 지원 2만명 중 소 기 업 한계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129 한계 소상공인 3천개소 지원 등 지 서울형 기반·먹거리 산업 육성 뿌리기업 1천개社 지원 등 61 민생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뉴딜일자리 500명 등 187 미래인재 양성 120 캠퍼스타운, 교육플랫폼 구축 등 일상 삶 과 자 립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78 7.5만명 연간 10만원 교통마일리지 지원 ス 원 회복 청년 재무상담 지원 7 영테크 4,500명 추가지원 지하철 1~8호선 재정지원 서울교통공사 1,000억원 1,000 대 중 교 통 재 정 지 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1,000억원, 마을버스 100억원 1,100 96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기반 조성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등 일 상 회 복 녹색여가 공간 조성 216 공원 내 책쉼터 조성 등

		소 계	2,061	
	재택치료자 등	재택치료자 등 생활지원 확대	1,680	생활비 지원, 동거가족 안심숙소 제공
방역	지원 확대	격리시설 운영 등 의료지원 강화	204	생활치료센터,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등
87	코로나 1 9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 강화	97	자가검사키트 530만개 지원 등
	대 응 역 량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36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등
	강 화	방역종사자 사기진작	44	방역 종사자 사기진작 격려금 지급
		소 계	1,130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2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안 심 도 시 서울 조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지원	138	장애인 활동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1인가구 돌봄 강화	23	안심보안관 63명, 스마트보안등 1,500등
안심	서 민 주 거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등	59	민간토지 활용 상생주택, 주거상향 지원 등
	안 정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확대	59	신속통합기획 20개소, 모아타운 12개소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110	어린이보호구역 380개소 개선 등
	안 전	도로, 하천, 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114	시설물 보수보강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보강	33	노후전선 정비, 기능보강 등
	교통인프라	교통인프라 조기 확충	303	9호선 전동차 18칸, 율곡로 6월 준공 등
	平ったニ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62	주차장 354면 신축·증축
	의	무경비 등	3,800	

2. 재무국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조 1,662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303억 4천만원) 증액된 수준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성〉 (단위 : 백만원)

7.11			예 산 액				
구분 세목	예산		호거세시.	증	비	고	
	당초	기정	추경예산	당초	기정		
총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보전수입등	_	_	830,340	830,340	830,340		
순세계잉여금	_	_	700,551	700,551	700,551		
법정잉여금	_	_	129,789	129,789	129,789		

가.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편성

○ 재무국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조 8,712억원) 중 일부(8,303억 4천만원)를 순세계잉여금(가용재원 중 7,005억 5천 1백만원)과 법정잉여금(법정의무경비 중 1,297억 8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단위 : 백만원)

7.11			예 산 액				
구분 세목	예산		추경예산	증	刊	고	
	당초	기정	구경 예산	당초	기정		
총계	23,335,941	23,335,941	24,166,281	830,340	830,340		
보전수입등	_	-	830,340	830,340	830,340		
순세계잉여금	-	-	700,551	700,551	700,551		
법정잉여금	-	-	129,789	129,789	129,789		

- ※ '21회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조 4,428억원(일반회계 5조 8,712억원, 특별회계 5,716억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일상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재원과 조정교부금 등 법정 전출금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각종 절차 및 의회의 의결 등 확정되지 않은 결산 전망액을 근거로 법정 의무경비* 등에 대한 선 충당 없이, 순세 계잉여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자치구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 감채기금 적립 등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u>법 제19조</u> <u>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u>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u>부득이한 경우에만</u> 전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u> <u>잉여금을</u>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u>지방채의</u>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2019.8.16.)호]: "전년도 세입과 세출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전망된다면,「지방회계법 시행 령」제17조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용처(안)〉

- 순세계잉여금(5조8,712억원) 법정의무경비(4조2,120억원) = 기용재원(1조6,592억원) 【법정의무경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포함)】
- 자치구 전출금 (1조4.949억원)
 - 조정교부금(1조 2.377억원), 재정보전금(921억원), 시세징수교부금(1.651억원)
- **교육청 전출금 (8.224억원)** : 보통세(5.398억원), 담배소비세(240억원), 지방교육세 (2.586억원)
- 타회계 전출 (2.354억원)
 - 소방안전특별회계(43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454억원)
 - 도시지역분 증수액(100%) 3개 특별회계 법정지원 (1,857억원)
 - ☞ 도시개발특별회계 70%,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 **감채기금** (1조6,592억원) : **순세계임여금**(5조8,712억원) **법정경비(4조2,120억원))** × **50%**
- 한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5조 3,401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5,311억원)을 합한 5조 8,712억원으로 전년(3조 4,653억원) 대비 69.4%(2조 4,059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1회계연도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②	수납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라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2021	47조 7,591	52조 8,591	45조 3,337	7조 5,254	9,972	853	6조 4,428
일반회계	33조 8,348	39조 1,730	32조 9,602	6조 2,127	2,665	751	5조 8,712
특별회계	13조 9,243	13조 6,861	12조 3,735	1조 3,126	7,307	102	5,716
2020	46조 7,985	49조 5,397	44조 4,099	5조 1,297	1조 89	1,082	4조 126
증 감	9,606	3조 3,194	9,238	2조 3957	△117	△199	2조 4,30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1,644억원) 제외, 보조금 반납금은 실제 반납예정 금액

○ 이처럼 (가)결산상 순세계잉여금(전망)이 급증한 원인은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액(20조 237억원) 대비 6조원에 달하는 과다한 지방세 초과세입(29.9%, 5조 9.774억원) 발생에 따른 것임.

'21년 가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산출

-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5조 8,712억원
 - 세입초과징수* : 5조 3,401억원(예산현액 : 33조 8,348억원, 결산 : 39조 1,730억원)
 - ▶ 지방세 초과징수 : 5조 9,774억 원(예산현액 : 20조 237억원, 결산 : 26조 12억원)
 - ▶ 세외수입 부족징수 : △6,373억 원(예산현액 : 1조 7,527억원, 결산 : 1조 1,153억원)
 - **세출 집행자액** : 5.311억원

◆ 세입초과징수 주요 내용

- O 지방세 : 26조 12억원(예산현액 대비 5조 9,774억원 초과징수)
 - <u>취득세 8조 100억원 ······· 2조 9,511억원 초과징수(158.3%)</u>
 - ·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공시가격의 상승, 부동산의 공급 부족과 잦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패닉 바잉에 의한 세입 증가
 - <u>지방소득세 7조 4,273억원····· 2조 2,309억원 초과징수(142.9%)</u>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증가 등

- 재산세 등 기타 10조 5,639억원······7,955억원 초과징수(108.1%)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주택 평균 14.9% 상승) 정책효과 등
- O 세외수입 : 1조 1,153억원(예산현액 대비 △6,373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5,231억원······△7,277억원 부족징수(41.8%)
 - · DMC 부지 매각 추진지연(7.500억원↓) 등으로 부족 징수
 - 임시적 세외수입 5.874억원·····929억원 초과징수(118.8%)
 - · 시비보조금반환수입(954억원 ↑) 예산 미편성 등에 따른 초과 징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 =(A)+		초과세입금	세출예산 집행잔액	
,	금액	증가율	(A)	(B)	
'22년 1회	830,340	-	_	_	
'21년 편성	3,465,276	50.4	2,929,780	535,496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622,437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99,989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64,011	

- 한편, 재무국에서는 2022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세입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거래 위축이 나타나 2022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면 활동 관련 산업의 회복이 지체될 것으로 보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도.
-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지방세수입' 예산을 전년(20조 238억원) 대비 15.3%(3조 719억원) 증액하여 본예산에 편성(23조 956억원)하였는바,
- 비록, 2021회계연도 (가)결산상 지방세 초과세입(5조 9,774억원)에 따른 대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5조 8,712억원 전망) 발생이 전망되어, 일면 2022 회계연도 세입결손 우려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는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은 2022년 세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수입'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순세계잉 여금 중 가용재원(미확정)으로 일부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 추가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기정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가용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시기라고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나, 이처럼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할 것으로,
- 재무국의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면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음.

3.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1,984억 3천 1백만원 으로 기정예산(당초, 3조 1960억 3천만원) 대비 24억 1백만원(0.08%) 증액된 수준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

					2022년도			- 증감율(%)	
	구	구 분	예	산	산 추경		감	о́ П	본 (/ 0 /
			당초	기정	예산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196,030	3,196,030	3,198,431	2,401	2,401	0.1	0.1
ᆌ		소 계	851,306	851,306	853,707	2,401	2,401	0.3	0.3
행 정	행 7	정운영경비	794,085	794,085	794,085	_		-	_
관 리	7	재무활동	15,431	15,431	15,463	32	32	0.2	0.2
디)	나 업 비	41,791	41,791	44,160	2,369	2,369	5.7	5.7
	교	부금	2,344,723	2,344,723	2,344,723	П	_	_	_

O 재무국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반환금" 사업의 '기타반환금' (3,229만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의 '출연금'(23억 6,871 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2022 예산		0000 1] 2]	당초예산대비				
세부시	세부사업별		기정	2022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비율	-(%)	
		당초	7178	(176개년년/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196,030	3,196,030	3,198,431	2,401	2,401	0.1	0.1	
소	계	18,067	18,067	20,468	2,401	2,401	13.3	13.3	
	-재산 』 반환금	15,430	15,430	15,463	32	32	0.2	0.2	
	서연구원 출연금	2,637	2,637	5,005	2,369	2,369	89.8	89.8	

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 본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수령한 매각대금을 연차별로 분납(3회, 2024년 12월 이전까지)하여 반환하는 사업으로.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당초)예산(154억 3천만원) 대비 0.2%(3천 2백만원) 증액된 154억 6천 3백만원 수준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二룹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계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3. 기타 반환금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u>기타 반환금</u> ※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수 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 시유재산 매각 계약 내역 〉

재산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m²)	매각금액 (백만원)	계 약 체결일	매수자	비고
원지동 종합의로사설 예정부지	서초구 완동 34-11 외 59팔시	전,답 임야	60,002	73,291	'16.12.8	보 건 복지부	5회 분납('17~'21년) 납부 기일(매년 12.1)

○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현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6가)을 서울추모공원 부지(시유지, 서초구 원지동)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732억 9천 1백만원, 2016.12.8.) 후,

〈 매각대금 납부 현황 〉

연도별	'16.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계약금)	(1차)	(2차)	(3차)	(4차, 부과 유예)	(5차)
납부액	52억원	105억원	288억원	21억원 (분납이자)	144억원	144억원

※ 총 466억원(계약금 52억원, 중도금 393억원, 분납이자 21억원)

- 계약이 합의해제(2021.4.5.)됨에 따라 기 납부(466억 2천 3백만원)받은 대금 중용역비로 사용된 6억 7백만원을 제외한 460억 1천 6백만원을 3회에 나누어 2024년 12월 이전까지 분납(이자포함)하려는 것으로.

〈 반화금 연차별(3회) 분할 지출 계획 〉 (단위 : 원)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12. 이전	
분납 원금	15,338,606,000	15,338,606,000	15,338,606,59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분납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이자액을 추가 반영*하고,
 - * 본예산 15,385,126천원 → 추경예산 15,416,770천원, 증 31,644천원
 - ※ COFIX 금리 0.82%('21.6.15.기준) → 1.55%('21.12.15.기준)

□ 추진경위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로 신축·이전 추진
 - · '14.12.04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의체결(보건의료정책과)
 - '16.12.08 : 서울시-복지부간 매매계약 체결(자산관리과)
 -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신축·이전 추진
 - ' '19.09.08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 언론발표
 - · '20.07.01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 '21.04.05 : 서울시-복지부간 합의각서(MOA)체결(보건의료정책과)
- 관련 시유재산의 위임관리 기관인 성동구의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소송 제기 이후 추가 발생한 별건 매각 귀속금과 이자를 종전 소송(패소)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기타 반환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 * 종전 재개발구역 내 점유된 물건 매각비율(10%) 적용한 것을 일반매각 귀속비율 (20~30%)로, 이자율은 민법상 연 5%로 변경 적용하여 정산(미 귀속금 40,937,763원 + 이자 4,960,174원)
- ※ 본예산 45.251천원 → 추경예산 45.898천원. 증 647천원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반환금등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15,385,126천원 ○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 45,251천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15,416,770천원○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45,898천원				
	증감사유					
	원지동 매각대금 반환금 지출 후 예산(기타 반환금 등) 잔액 13,608,150원을 외한 32,290,000원 추경					

- 시유재산 관리를 위임한 자치구와의 소송이 발생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성격의 '매각 귀속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판결 결과로 볼 때 재무국의 자의적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으로,
- 향후 자치구 위임 사무인 '매각 귀속금' 운영에 대한 면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통하여 자치구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u>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u>

-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 5. (이하 생략)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본 사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을 위한 것으로, 기정(당초)예산(26억 3천 7백만원) 대비 89.8%(23억 6천 9백만원) 증액된 50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7	병상이전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 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 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 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 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 상	

- 본 추경예산안은 2019년 귀속분 출연금에서 감액 의결한 '재산세 도시 지역분(3억 9천 9백만원('19 및 '20년 귀속 출연금 중))'과 출연동의안 심사가 보류되어 당시 미편성한 2021년 귀속분*(22억 3천 8백만원) 합계액(26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한 기정(당초)예산에 더하여.
 - * 2021년 귀속분 출연동의안 심사 경과
 - ·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4일 상정·심시보류
 -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인기결)
- 2022년 귀속분* 출연금 예산(23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결국 그동안 출연동의안 보류 등으로 지연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모두를 2022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임.
 - * 2022년 귀속분 출연동의안 심사 경과
 - ·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심사보류
 -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 '20년과 '21년 미출연 금액을 포함한 '22년 예산액은 5.005백만원임
 - '22년 본예산 '20년분 미출연액: 399백만원(도시지역분)
 - '22년 본예산 '21년분 미출연액 : 2.238백만원(전액 미출연)
 - '22년 추경예산 '22년분 출연액 : 2,369백만원
- 이처럼, 수 회에 걸친 의회의 출연동의안의 심사보류로 인하여 출연이 지연 되면서 그동안 지적된 내용과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첫째,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출연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현황 붙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설립·운영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 (기타법인)으로 설립·등기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일체의 재정투자 없는 행정안전부가 주무기관으로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이례적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18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가 <u>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u>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재무국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야 된다는 법리 해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와는 다르게 기타법인으로 설립· 등기한 것이 개별 법률(「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출자출연법 적용을 위한 법인 격의 재단법인화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지자체가 설립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어 야 함 (법률자문회신 2018-0903,법률지원과 2018.11.16)

- 둘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세입 결산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출연 금으로 적립하도록 강행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에서의 기금 출연에의 우선 사용 규정 또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 '합헌'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할 뿐. 출연금 규모 산정은 출연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법령에 따라 지방세(보통세) 세입액에 고정비율을 적용 하여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한 개선 추진실적이 미미한 실정임.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이 기금 용도 중 "출연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시행령은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여부 검토 여부 검토 기금의 우선사용 규정역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합헌)

- 다만,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출연금 산정이나 관리방안 개선에 대하여 서울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21.10월~'22.5월)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현황
0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출연금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구 요청(21.9.13)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서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의 횔용 및 관리운영 개선방
	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 연구 의뢰 ('21.9.16.)
	상호 합의하여 시·도지사협의	· 연구기간 : 2021.10월~2022.2월 (5개월)
	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 '22년 5월까지로 연장
	개선	○향후추진계획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출연 문제 등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개정 요청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의 일정부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 개선방안 수립시 개선 사항 검토 및
	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시행 사항 관리
	도록 제도화	-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관리 개
		선 추진 및 시의회에 설명

- 셋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는 등 사실상 목적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연구원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보통세)에도 포함되고 있는바 이를 출연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결과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지 출 문제를 개선	○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면담 을 하고 있음 - '21.9.30 행안부 전화면담, '21.11.4. 개정건의·면담 ※ 행안부 의견 : 모든 지자체 협의시 신중검토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회수와, 사업 심사를 통한 적정한 사업비 규모 산정을 통한 출연은 출연자로서의 출연기관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할 것으로 그 당위성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추진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국	99,313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8,973	10,423	11,161
서울시	22,450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09	2,631	414	2,424	2,815
시 본청	18,44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	2,020	2,369
작치 구	4,010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5	384	414	404	446

- ※ 서울시(본청)은 12년간('11~'22) 184억원 출연 예정(연평균15.3억원), 추경 미반영
- ※ '18년 시본청 출연규모는 2,078백만원이나, 실제 출연규모는 '17년도 미출연금 1,966백만원을 포함한 4,044백만원('17년도분 '18.1.9 지급, '18. 11월 지급완료)
 - * '20년 시본청 법정출연금 2.419백만원은 미출연 하였음
 - * '21년 예산편성 현황 : 2,020,215천원
 - '20년도 미출연액 2,419,349천원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399,134천원 (20년 201,826천원, '21년 197,308천원)을 처감하여 편성되었고, '21년분 2,237,582천원음 미편성
 - * '22년 예산편성 현황 : 2,368,712천원
 - '21년 미출연액 2.237.582천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미편성액 399.134천원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출연기관 고시 및 법인등기 형태 현황

-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출연기관 고시 현황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1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연구원	재단법인
2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기술연구원	재단법인
3	출연기관	부산광역시	본청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재단법인
4	출연기관	대구광역시	본청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5	출연기관	인천광역시	본청	인천연구원	재단법인
6	출연기관	전라남도	본청	광주전남연구원	재단법인
7	출연기관	대전광역시	본청	대전세종연구원	재단법인
8	출연기관	울산광역시	본청	울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9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단법인
10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경기연구원	재단법인
11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단법인
					(법인누리집정관)
12	출연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13	출연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재단법인
14	출연기관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정연구원	재단법인
15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재단법인
16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재단법인
17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강원연구원	재단법인
18	출연기관	강원도	철원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단법인
19	출연기관	충청북도	본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20	출연기관	충청북도	본청	충북연구원	재단법인
21	출연기관	충청남도	본청	충남연구원	재단법인
22	출연기관	충청남도	본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재단법인
23	출연기관	전라북도	본청	전북연구원	재단법인
24	출연기관	전라북도	본청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재단법인
25	출연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단법인
26	출연기관	전라남도	본청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27	출연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단법인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28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29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단법인
30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재단법인
31	출연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단법인
32	출연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재단법인
33	출연기관	경상남도	본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재단법인 (누리집)
34	출연기관	경상남도	본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단법인
35	출연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36	출연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본청	제주연구원	재단법인
37	출연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본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
38	출연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본청	제주한의약연구원	재단법인

-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고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근거 비교

구분	출연기관 설립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등
설립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세기본본법」
근거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u>지방자치단체가</u>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
	<u>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u>	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u>지방자</u>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u>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u> 지방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다)을 설립한다.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u>「민</u>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u>「민</u>	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을 준용한다.

구분	출연기관 설립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등
운영 사항	제2조(적용 대상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해당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공익법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 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 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 무를 감독한다.
출연금 산정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없으면이에 따라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작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한다.

참고 3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회계 전출 근거 법령

교부대상	재 원	비율	교부 근거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비율"이란「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 한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정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 제95조(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 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89조(도시·주 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사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촉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 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 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 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 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 계 조례 제5조의2(재정비촉 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 계 전압)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 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